

멕시코 회사설립 및 비자

CHO & ASOCIADOS 법무•회계법인 대표

강사: 조우현 변호사



CHO & ASOCIADOS

LEGAL & ACCOUNTING SERVICES

I. 멕시코 회사설립

목차:

- 1. 회사종류
- 2. 회사설립 준비서류
- 3. 회사설립 절차
- 4. 회사설립 후 기타 절차

1. 회사종류 - 투자방식

▶ 1) 단독 투자

- ▶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법 상 투자를 제한하는 산업이나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 100%를 허용하고 있다.
- ▶ 단독투자를 통한 법인설립,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.

▶ 2) 합자 투자

- ▶ 합작투자는 하나의 공동기업 설립으로 그 구성요소인 인적 요소와 자본적 요소를 출자하여 설립한다.
- ▶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멕시코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한다.
- ▶ 멕시코에서의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변 자본 주식회사 (S.A. de C.V.) 형태가 일반적이다. 그 이유는 자본의 유가증권화, 유한책임제도, 자본 통합 가능, 이사회 (Board of Director)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, 회사 경영의 항구성 등이다.

1. 회사종류 - 투자법 상 분류

1. 주식회사
(Sociedad Anónima / S.A.)
2. 유한책임회사
(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/ S. de R.L.)
3. 합자회사
(Sociedad en Comandita Simple / S. en C)
4. 주식합자회사
(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/ S. en C. Por A)
5. 합명회사
(Sociedad en Nombre Colectivo / S.N.C)
6. 협동조합
(Sociedad Cooperativa / S.C.)
7. S.A.S. (*2016년 9월 15일 시행)
(Sociedad por Acciones Simplificada / S.A.S.)

1. 회사종류

-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비교

구분	유한책임회사	주식회사
최소 자본금	- 기존 \$3,000페소 였으나 - 최저자본금 제한금액 폐지 - MXN\$2 PESOS 이상	- 기존 \$50,000페소 였으나 - 최저자본금 제한금액 폐지 - MXN\$2 PESOS 이상
회사 형태	소규모 폐쇄형	대규모 개방형
주권 발행	원칙적 발행불가	주식과 회사채 발행, 상장 가능
감사 선임	선택	필수
발기인 수	출자자 수 최소 2인에서 최대 50인	최소 주주 2명 이상 최대 무제한
회사 경영 형태	대표이사 혹은 이사회 체제 경영가능	1인 이사 혹은 다수의 이사로 경영가능
외부감사 의무	없음	없음
의결기관 및 종류 출자 양도	정기 및 임시 사원총회 출자사원의 과반수 찬성 요구	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자유로움

2.회사설립 준비서류

▶ 1.개인 출자 회사

1. 2인이상 출자자 여권 및 체류비자
2. 회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임대비 세금계산서 그리고 주소지 증명서 (Comprobante de Domicilio) 원본 및 사본
3. 감사 (Comisario)1명이상 임명 (현지인/외국인 무관)
4. 현지 멕시코인 혹은 영주권을 취득 한 한국인 최소 1명이상 회사 법적 대리인(Apoderado)으로 임명

▶ 2.법인 출자 회사

1. 회사정관 스페인어 번역, 공증 및 아포스티유 원본
2. 사업자등록증 스페인어 번역, 공증 및 아포스티유 원본
3. 법인설립 위임장 스페인어 번역, 공증 및 아포스티유 원본

3. 회사설립 절차

1) 상호허가 취득

Permiso de Denominación Social

- ▶ 멕시코 경제부 회사국(www.tuempresa.gob.mx) 사이트에 변호사나 공증사무실을 통해 신청 함
- ▶ 수수료는 무료이며 최대 동시에 3개 회사명 (Razón o Denominación Social) 사용허가 신청 가능
- ▶ 통상 2~3일안에 상호허가여부 확인 가능

3. 회사설립 절차

2) 정관작성 Estatuto Social

1.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(회사법 제 6조와 91조)

- ▶ 발기인 (출자자)들의 성명, 국적, 주소지
- ▶ 상호, 영업목적, 존속기간, 본점소재지
- ▶ 자본금(출자금) 총액 (고정자본금 및 가변/변동자본금을 표기)
- ▶ 각각 출자자의 출자방식 (현금 혹은 현물출자)
- ▶ 경영 방식 (대표이사 일인 혹은 이사회 방식..) 및 이사의 권한
- ▶ 이사진 임명 및 정관 공증절차 대표자 임명
- ▶ 이익금/손실금의 처분/분배방법 및 준비적립금의 총액
- ▶ 해산 사유 및 청산 시 청산자 임명 및 청산절차
- ▶ 납입 자본금, 발행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그리고 미납입 주식의 지급방법
- ▶ 회사 창업자들의 회사 이익금에 참여 비율
- ▶ 1인 혹은 그 이상의 감사원 임명(유한책임회사는 선택사항)
- ▶ 주주총회의 권한, 표결방식 및 업무내용

3. 회사설립절차

3) 설립정관 공증

- ▶ 표준정관에 의거 변호사 혹은 공증사무실에서 스페인어로 작성
- ▶ 회사법에서 명시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함
- ▶ 설립정관 공증 시 전체 출자액의 최소
-20% (주식회사의 경우) or 50% (유한책임회사의 경우)
납입하고 나머지는 1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입의무
- ▶ 정관의 주요내용 명확히 확인 요함

3. 회사설립 절차

4)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RFC

1. 신청서류

1. 재무부(SHCP)에 R-1(등록신청서)를 통해 납세자번호 R.F.C. (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) 신청한다. 회사로 신청한 R.F.C.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해할 수 있다.
2.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점의 소재지인 회사의 임대차계약서, 임대비세금계산서 그리고 회사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각종 공과금 고지서 즉 주소지증명서 (Comprobante de Domicilio) 원본이 필요하다.

2. 신청방법

- ▶ 국세청 예약을 통해 직접 회사 대표가 예약 일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출두하거나 법인 설립정관 공증을 담당했던 일부 공증사무실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.

3. 회사설립 절차

5) 설립정관 등기

- 설립정관을 공증한 공증사무소나 대서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사무소에 등기 (Inscripción ante 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y de Comercio) 업무를 대행한다.
- 설립정관이 등기소에 등기되어야만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발생하므로 회사설립공증정관의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 할 수 있다.
- 등록 완료 후 회사등록번호인 FOLIO MERCANTIL 등기번호를 취득한다.

3. 회사설립 절차

6) 회사 전자서명 및 세무코드 취득

1. 전자서명(FIEL)등록과

세무코드(Contraseña/CIEC) 등록

- ▶ 국세청 (SAT)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한 이후 회사 전자서명 등록과 세무코드 등록을 마쳐야 한다.
- ▶ 전자서명이 등록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(Factura Electrónica) 발행 가능하다
- ▶ 세무코드가 있어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가능하다.

2. 신청방법

- ▶ 사전에 국세청 예약을 통해 직접 회사 대표가 본인 신분증, 회사정관, 공증위임장, USB 메모리를 지참하여 출두해야 한다.

* 먼저 회사대표 개인 전자서명을 취득해야 한다.

3.회사설립 절차

7)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기업정보 시스템 등록

1. 외국인투자기업 등록

- ▶ 경제부 (SECRETARIA DE ECONOMIA)산하의 외국인 투자국 (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) 에 투자기업 등록은 법인 설립 후 40일(공휴일을 제외한)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▶ 법인 설립 후 40일 이내에 등록 할 경우 등록 수수료 무료
- ▶ 등록 기간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된다

2. 기업정보 시스템

- ▶ 상공회의소 및 연맹법에 의거 상공회의소(CANACO) 산하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(SIEM/ Sistema de Información Empresarial Mexicana)에 기업 업종별로 (제조업/상업/서비스업...) 등록을 한다.
- ▶ 기업정보 시스템에 처음 등록 시 직원의 수에 따라 등록비를 지급한다 (\$300- \$600페소).

3.회사설립 절차

8)법인은행계좌 개설

- ▶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은행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.
- ▶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회사의 모든 서류를 은행지점에 제출하면 1주일 정도 법무팀 승인을 받아 은행계좌를 개설한다.
- ▶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법인대표/법인장이 워킹비자가 없어도 관광비자/방문비자를 가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은행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.

3.회사설립 절차

9)IMSS, INFONAVIT, SAR 등록 및 TESORERIA 등록

1. **사회보장청 (IMSS) 고용주 및 피고용인 등록**
 - ▶ 외국인 혹은 현지인을 직접채용 하고자 할 때 법인은 우선 사회보장청에 고용주(Registro Patronal) 등록 및 피고용인 등록
2. **주택기금청 (INFONATIV) 및 국민연금공단 (Comisión Nacional de Sistema de Ahorro para el Retiro) 등록**
3. **주정부 재무부 급여세 납부 등록**
 - ▶ 관할 주정부 재무부(Tesorería del Estado) 에 급여세 (Payroll Tax/Impuesto de Nomina) 납부자 등록

3. 회사설립 절차

10) 수입업자등록/일반수입면허 취득 Padrón General de Importadores

1. 일반 수입업자/수입면허 등록

- ▶ 제품, 원자재, 설비 및 부품의 수입 전에 회사는 국세청 (SAT) 과 관세청에 수입업자등록/수입면허(Padrón General de Importadores)신청을 하여 수입업자로 등록되어야 회사이름으로 직접 수입 가능.

2. 신청방법

- ▶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통관사 (A.A. ID번호/이름) 정보를 가지고 신청

3. 승인기간

- ▶ 워킹데이 5~7일

*일부특수 제품은 별도로 특수 수입면허 Padrón Sectorial 를 취득해야 함.

4. 회사설립 후 기타 절차 - 대표이사/법인장 워킹비자 취득

- ▶ 이민국 회사/고용주 등록 후 대표이사/법인장 워킹비자 신청하고 영사인터뷰 승인서가 나오면 멕시코 영사과에서 인터뷰 후 임시비자를 발급받는다. 차후 멕시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카드형 체류비자를 발급받는다.
- ▶ 워킹비자 취득절차는 다음 강연 워킹비자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함.
- ▶ 워킹비자 취득 후 각 기관 회사임시 법적대리대행인 권한 취소 및 등록

4. 회사설립 후 기타 절차 - 보건부 및 환경부 등록

1. 보건부 등록

- ▶ 식품, 식품첨가제, 음료 및 주류, 의약품, 미용용품, 위생용품 수입 및 판매 필요 시
- ▶ 보건부 위생관리국에 SSA-03-002-A 서류 제출
- ▶ 제품에 따라 6개월~1년 소요

2. 환경부 환경면허

- ▶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영향평가 필요 시
- ▶ 환경부 환경면허 신청서 SEMARNAT 05-002 서류 제출
- ▶ 면허 종류에 따라 30일에서 60일 소요

4. 회사설립 후 기타절차 - 상표등록

- ▶ 멕시코 특허청(IMPI) 상표국에 보호받고자 하는 회사 상표(Marca)를 출원 등록한다.
- ▶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통상 5-6개월 후 상표등록증이 발급된다.
- ▶ 멕시코에서 상표등록 형태는 상표명(Nominativa), 로고(Innominada), 상표명과 로고 결합(Mixta) 혹은 입체상표(Tridimensional) 등 4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다.

II. 멕시코 비자

목차:

- ➡ 1. 비자종류
- ➡ 2. 워킹/취업비자 취득절차
- ➡ 3. 영주권
- ➡ 4. 가족/동반비자
- ➡ 5. 비자갱신
- ➡ 6. 출·입국 허가

1. 비자종류

1. 임시 방문객 (FMM) => 180 일 이하 체류

- ➡ 1) 관광
- ➡ 2) 비즈니스

2. 임시거주비자 (Residente Temporal) => 180일~4년까지 체류

- ➡ 1) 워킹/취업비자
- ➡ 2) 주재원 파견비자
- ➡ 3) 가족동반비자
- ➡ 4) 학생비자
- ➡ 5) 단기출장비자

3. 영주권 (Residente Permanente)

2. 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1. 고용주 등록
2. 워킹비자 신청
3. NUT 영사인터뷰 승인번호 취득
4. 멕시코 영사 인터뷰 예약
5. 인터뷰 후 비자발급
6. 멕시코 입국 후 30일내 외국인거주등록
카드비자 발급

2. 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1) 고용주 등록

Constancia de Inscripción del Empleador

1. 준비서류

- ▶ -등기된 회사정관/PRIMER TESTIMONIO DE ACTA CONSTITUTIVA
- ▶ -대표자 위임장/PODER NOTARIAL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▶ -사업자등록증/RFC
- ▶ -회사 주소지증명서/COMPROBANTE DE DOMICILIO
- ▶ -최근 세금신고증명서/ULTIMA DECLARACION DE IMPUESTO
- ▶ -고용주등록증 신청서 작성: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
- ▶ -고용리스트 작성/LISTA DE EMPLEADO (현지인 직원이름 최소 1인 이상 필요):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

2. 신청장소

- ▶ -멕시코 이민국

3. 소요기간

- ▶ -고용주 등록증 발급일까지 신청일로 부터 통상 2주~3주 정도 소요

2. 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2) 워킹비자 신청 Oferta de Empleo

1. 준비서류

- 신청서 작성: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
- 초청장 작성/OFERTA DEL EMPLEO: 회사 대표자 서명 필요
- 외국인 여권사본
- 회사대표자 신분증 사본/원본대조

2. 소요기간

- 신청 접수 후 2~3주 후 영사인터뷰 승인번호 (NUT) 발행

2. 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3) 멕시코 영사 인터뷰 예약

1. 인터뷰 예약

- ▶ 인터뷰 원하시는 해당국 멕시코 영사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
- ▶ NUT 영사 인터뷰 승인서 첨부파일로 송부 혹은 NUT번호 제공
- ▶ 예약일 통지 받음

2. 인터뷰 준비서류

- ▶ 멕시코 이민국에서 발급된 영사인터뷰 승인서 사본
- ▶ 여권원본 및 사본
- ▶ 컬러 여권용 컬러사진 1매
- ▶ 영사 인터뷰 신청서 작성
- ▶ (해당 영사과에서 인터뷰전에 제공/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)
- ▶ USD\$36달러 영사 인터뷰 수수료 지참
- ▶ 신용카드 지참 (경우에 따라 요구)

2.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4)인터뷰 후 비자발급

1.인터뷰 시 주요 예상 질문

- ▶ 회사명, 주요사업목적, 근무지, 직책/직급, 월 급여, 초청장 발급한 대표자 이름 등등..

2.인터뷰 후 여권에 비자발급

- ▶ 통상 2~3일 혹은 한국의 경우 1주일 뒤 비자발급

3.비자유효기간

- ▶ 비자발급 일로부터 180일 이내 멕시코 입국 후 외국인거주자 등록 후 카드비자 발급의무

2.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5)멕시코 입국 시 주의사항

- ▶ 입국 심사 시 멕시코 이민청 직원에게 영사인터뷰 후 여권에 부착한 비자를 보여 주어야 함.
- ▶ 입국비자양식/FMM 기재란에 보면 7. 입국목적 PURPOSE OF TRIP 란 OTHER 란에 표기 후 이민청 입국 심사관에게 CANJE DE DOCUMENTO라고 설명해야 함.
- ▶ 그러면 이민국 직원이 CANJE 라는 란에 표기하고 30일 체류기간을 적어 준 입국비자를 건네 줌.

2. 워킹/취업비자 발급절차

6) 멕시코 입국 후 비자교환

Canje de Documento

1. 신청장소

- ▶ 멕시코 입국 후 30일내 카드비자 발급신청 접수
- ▶ 멕시코 이민청

2. 준비서류

- ▶ 신청서, 여권사본/원본대조, 입국비자 FMM 원본, 카드비자 발급 수수료 \$3,715페소 납부영수증, 등등

3. 승인 후

- ▶ Formato Basico 인적사항 인터넷 기재
- ▶ 이민청 출두 사진제출, 지문날인 카드비자 발급신청서 서명

4. 외국인등록번호 CURP 및 카드비자 발급

5. 기간: 통상 1~2주일 정도 소요

3. 영주권 (영구거주자)

Residente Permanente

1. 신청자격/대상

- ▶ 멕시코 4년 이상 합법적 체류자
- ▶ 가장이 영주권을 취득 했을 경우 그 동반가족들
- ▶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적 자녀를 둔 자
- ▶ 매월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는 자

2. 준비서류

- ▶ 영주권 발급 신청서 및 신청레터, 4년 합법적 체류입증 할 카드비자 원본, 이민청 영주권 발급 심사비 및 수수료 납부증명서

3. 정부 수수료

- ▶ 심사 수수료\$1,187페소, 영주권발급 수수료\$4,528페소

4. 절차

- ① 신청 → ② 심의 및 승인 → ③ 사진제출, 지문날인 카드비자 발급신청서 서명 → ④ 카드비자 발급

5. 기간: 카드비자 발급까지 통상 4주정도 소요

4.가족/동반비자 Unidad Familiar

1. 자격조건/대상

- ▶ 멕시코 비자를 취득한 가장의 배우자, 미성년 자녀, 부모, 기타

2. 체류기간

- ▶ 1년에서 4년 그후 영주권 취득 가능

3. 신청장소

- ▶ 멕시코 이민청 혹은 주한멕시코 대사관 영사과

4. 준비서류

- ▶ 가족동반비자 발급신청서, 가장의 카드비자 사본/원본대조,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번역 및 아포스티유), 부양자 경제력 증빙서류 (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신용카드), 주소지증명서 (최근 공과금 고지서), 비자 심사 수수료 (\$1,187페소) 및 비자 발급 수수료(\$3,715) 납부 영수증

5. 절차

- ① 신청 → ② 심의 및 승인 → ③ 사진제출, 지문날인 카드비자 발급신청서 서명 → ④ 카드비자 발급

6. 기간: 카드비자 발급까지 통상 4주정도 소요

5. 비자갱신

Renovación de Visa

1. 신청시기

- ▶ 만기일 1달 전 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갱신 신청 가능

2. 준비서류

- ▶ 카드비자 원본, 신청서, 재직증명서, 회사대표 신분증, 정부 갱신 수수료, 갱신신청레터,

3. 정부 갱신수수료

- ▶ 1년 \$3,715, 2년\$5,567 3년\$7,050, 4년\$8,356페소

4. 절차

① 신청 → ② 심의 및 승인 → ③ 사진제출, 지문날인
카드비자 발급신청서 서명 → ④ 갱신된 카드비자 발급

5. 기간: 카드비자 발급까지 통상 3주 정도 소요

6. 출·입국 허가

Permiso de Salida y Entrada

1. 대상

- ▶ 비자발급 혹은 갱신 신청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

2. 준비서류

- ▶ 신청서, 여권사본, 비자진행증명서(Acuse de Tramite), 사유서, 비행기표, 허가서 정부 수수료 (\$380페소) 납부 영수증, 증명사진

3. 절차 ① 신청 → ② 심의 → ③ 허가서 발급 → ④ 여행 후

4. 소요기간

- ▶ 출국 5일 전 신청

5. 신청장소

- ▶ 이민국 혹은 공항 이민청

6. 허가기간

- ▶ 60일 허가, 입국 후 10일내 허가서 반납

감사합니다!

조우현 변호사

cho@choasociados.com

www.choasociados.com

<멕시코시티 본사>

Varsovia 53 Oficina 401, Juárez,
Cuauhtémoc, Ciudad de Mexico,
06600, México.

(52-55) 5208-0208

<몬테레이 지사>

Carretera Miguel Alemán KM 14.2,
Local 33, Alianza, Apodaca, N.L.
66633, México

(52) 81-8345-0060

©Copyright 2017 Woo Hyun Cho All
Rights Reserved.



CHO & ASOCIADOS

LEGAL & ACCOUNTING SERVICES